

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!

2019년 최저임금 인상(10.9%)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「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<사업 개요>

가. 사업기간 : 2019. 1 ~ 6월

나. 접 수 처 :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

다. 신청대상 :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

라. 지원내용 :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

마. 지원조건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-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
-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(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)
-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

바. 지급방법 : 분기별 다음 달 계좌이체

-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요건 충족 시 부터 소급하여 지급

※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※ 문의 :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(055-749-8164)